

사업장폐기물배출자 [] 신고서 [] 변경신고서

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(사업장) (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: , 전화번호:)		
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	⑥ 업종		
	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(톤/년)	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(톤/년)	
	⑨ 제조공정		

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

⑩ 폐기물			⑪ 성질 · 상태	⑫ 배출량		⑬ 운반		⑭ 처리			
구분	종류	분류번호		톤/월	톤/년	운반자	운반량	처리 구분	업소명	처리 방법	처리량 (톤/년)
		□□-□□-□□									
		□□-□□-□□									
⑮ 변경사항			변경 전				변경 후				
⑯ 변경사유							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18조제2항 에 따라
[] 제18조제4항

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[] 신고
[] 변경신고 를 합니다.

신고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<p>1. 신고를 하려는 경우</p> <p>가. 수탁처리능력확인서(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나.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(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</p> <p>가. 수탁처리능력확인서(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나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p> <p>다.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</p> <p>라.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(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)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칭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「산업입지법」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칭을 적습니다.
-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(소분류)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.
-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, 원료·부원료·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.
-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비(非)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"1"로,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"2"로 구분하여 적고,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.
- ⑪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"1"로, 액체상태이면 "2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"자가"로,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.
- ⑭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"자가"로,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"위탁"으로 적고,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-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, ⑬란 및 ⑭란만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